# 수원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5구합71052 판결 징계처분취소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건 2015구합71052 징계처분 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친권자 모 C

피고 이목중학교장

변론종결 2016. 9. 21.

판결선고 2016. 10. 5.

# 주 문

- 1. 피고가 2015.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3일), 학생 5시간, 보호자 3시간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이수의 처분을 각취소한다.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20.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3일), 학생 5시간, 보호자 3시간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D. E, F, G, H. I.J. K, L, M, N은 2015학년도에 수원 이목중학교(이하'이 사건 학교'라 한다) 2학년에 재학하였던 학생들이다.

나. K, L, M, N은 2015. 7. 7.경 교사 0에게 D과 원고의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를 하였고, 이목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원고가 K 학생의 뺨을 때리고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생일파티에 사용할 비용을 독촉하고 D 학생의 부당한 행동에 동조하여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7. 17.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 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 3일(제3호)의 조치와 제17조 제3항, 제9항에 따른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이수(학생 5시간, 보호자 3시간)의 조치를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15. 7. 20.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서면사과', '이 사건 접촉 등 금지', '이 사건 학교봉사', '이 사건 특별교육이수'라 하고, 위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징계사유의 부존재)<sup>[1]</sup>

원고는 K의 뺨을 때리거나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생일파티에 사용할 비용을 독촉한 사실이 없고, D의 부당한 행동에 동조하여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사실도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 1) D, E, F, N, M. L 6명은 다솔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P'이라는 그룹명을 지어 함께 친하게 지내던 학생들이고(이하 위 6명 그룹을 지칭할 때는 'P'이라 한다), 위 6명은 함께 이목중학교에 진학하여 원고, G, H, I. J, K와 함께 12명이 'Q'이라는 그룹명을 지어 함께 친하게 지내왔다(이하 위 12명 그룹을 지칭할 때는 'Q'이라 한다).
- 2) P이나 Q은 종종 모임을 가지고, 멤버들의 생일에는 생일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이 돈을 모아생일선물을 준비하고 생일파티를 해주기도 하였다.
- 3) Q 멤버들은 2015. 6.경 7월이 생일인 D. M. E의 깜짝 생일파티를 한꺼번에 해주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나머지 9명이 각 4천 원씩 돈을 모으기로 하였으며, 돈을 걷는 역할은 원고가 맡게 되었다.
- 4) 그런데 위 9명이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가져오지 않자, 원고는 9명이 개설한 카톡방에 '안 가져오면 뺨때리꺼야', ㅆㅂ 돈 좀 갖고 와 제발'이라고 쓰기도 하고, 교실 마다 찾아다니며 독촉하기도 하였다.
- 5) K는 2015. 7. 9. 작성한 자기변론서에 '원고가 D 깜짝 생일파티한다고 4천 원을 가져오랬는데 못 가져 가서 원고가 내 뺨을 때리고 그 다음날 못 가져와서 내 목을 졸랐다'고 기재하였고, 담임 0과 상담시에는 '원고가 생일파티 비용 4천 원을 걷는 데 가져오지 않아서 뺨을 때리고 다음날은 목을 흔들었다.'고 말하였다.
- 6) 원고는 2015. 7. 14. 작성한 자기변론서에 '기억은 안 나지만 K에게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조른 적이 없다. 만약 뺨을 때렸다고 해도 손을 얼굴에 갖다 대는 식으로 장난을 쳤을 것이고, 목을 조른 것은 분명히 아

니다. 어깨를 잡고 살짝 흔들었다.'라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회의에 출석하여 "제가 걷기로 해서 찾아갔는데 K가 만 원밖에 없어서 걷지 못하고,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K의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조른 적은 없었다. 있다 해도 어깨를 잡고 흔든 것 같다. 기억이 안 난다. 뺨은 기억이 안 나서 친구들에게 물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제가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 7) N 작성의 진술서에는 '(원고가) 제 시간에 안 가져온 애들은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렸다. 저도 때리려했을 때 왜 뺨을 때리냐고 정색했더니 N은 좀 무섭다고 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만만한 애를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고, N은 D에 대한 2015구합68162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K가 원고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이 야기를 들었고, 나도 맞을 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8) 한편 D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형성된 그룹 내에서 지금까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욕설 및 손찌검이나 구타를 하고 사이버 언어폭력을 통한 그룹 내 왕따를 조장하였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5일), 전학,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이수(학생 5일, 보호자 5시간)의 각 조치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을 제11, 14, 18, 23호증 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 1) 학교폭력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법의 목적 및 위 규정의 문언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은 위에서 나열한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장난으로 가장한 행위나 형법상 범죄에 이르지 않은 괴롭힘도 가해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으며, 피해자가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으로 보아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할 것이다.
-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K는 표현을 일부 달리 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뺨을 맞고 어깨 내지 목 부위를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N 역시 원고가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원고도 스스로 '뺨을 때렸다고 해도 손을 얼굴에 갖다 대는 식으로 장난을 쳤을 것'이라거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D 등의 깜짝생일파티 비용으로 4천 원씩을 걷는 과정에서 K가 돈을 안가져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어깨를 붙잡고 흔드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학교 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이라 한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D 학생의 부당한 행동에 동조하여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 기도 하였다'는 점도 징계사유로 들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Q 일부 학생들의 진술서 중에 '원고는 D이 시키면 뭐든 다 했다'거나 '애들 왕따의 지시는 D가 하고, 원고는 모든 일을 같이 한다'는 기재(을 제14, 15호증)가 있으나, 이들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내용의 것들로서, 원고가 동조하였다는 'D의 부당한 행동'이나 '원고의 동조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원고가 2014년 D과 함께 M을 수돗가로 끌고가 물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을 뿌렸다'는 점을 그 일례로 들고 있기는 하나, 갑 제2호증의 2, 3, 을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D은 평소에도 수돗가에서 친구들에게 물을 뿌리는 장난을 많이 한 사실, 문제가된 당시에도 D와 M 등이 서로 수돗가에서 물을 뿌리는 장난을 하였고, D도 물을 많이 맞아 교복이 젖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례가 친구들 간의 통상적인 장난을 넘어 M에 대한 학교폭력에 이르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두고 원고가 D의 부당한 행동에 동조하여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달리 원고가 D의 부당한 행동에 동조하여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각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때에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다.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학교폭력은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폭행 자체의 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학교폭력 외에 K에게 지속적, 반복적, 주도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후 현재까지도 원고가 K를 비롯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문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성행에 비추어 원고가 특별히 K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접촉 등 금지, 봉사 및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 등 공익 목적에 비하여 이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K에게 이 사건 학교폭력을 행사한 이상,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이 사건 서면사과 처분은 앞서 살핀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최복규(재판장) 김선영 홍영진

## 미주

[1] 징계절차의 위법성을 다투는 주장에 관하여는 원고가 2016. 8. 31. 제1회 변론기일에서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